#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가합 544674 판결 징계조치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0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7가합544674 징계조치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 학교법인 E

변론종결 2017. 9. 13.

판결선고 2017. 10. 13.

# 주 문

- 1. 피고가 운영하는 D고등학교 학교장이 2017.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봉사 4시간, 심리치료 3시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 나. 원고는 2016. 10. 27. 같은 학교 학생인 소외 F, G 등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 2016. 11. 15.까지 위 채팅방에서 수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학생인 H에 대한 험담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

에서 대화내용에 욕설이나 비속어를 섞어 사용하기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의 행위를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다. 그런데 그 후 원고와 사이가 멀어지게 된 G이 H에게 위 대화내용을 전달하였고 H은 2017. 4.경 원고를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신고하였다.

라.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6. 5. 원고와 F, G(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 6. 26, "원고가 2016. 10. 27.부터 2016. 11. 21.까지 SNS(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F, G과 함께 H과의 교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사이버 폭력(비 방, 욕설, 따돌림)을 행하였다"는 이유로 D고등학교 학교장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 3항에 따른 학교봉사 4시간, 심리치료 3시간의 조치를 요청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이에 따라 D고등학교 학교장은 2017. 6. 27. 원고에 대하여 학교봉사 4시간, 심리치료 3시간의 조치 (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 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1의 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학교에서의 봉사
-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원고의 향후 입시 등 절차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원고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그러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직접적 효과가 아닌 사실적· 간접적 효과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처분은 그 처분 자체로 가해학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는 점, ②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훈령 제195호, 이하 '이 사건지침'이라 한다)' 제7조, 제8조, 제16조 등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적사항 또는 출결사항, 행동특성 등 항목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이사건 조치의 존재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로 인하여 원고가 향후의 진학, 직업 선택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sup>[1]</sup> 등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조치에 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 1) 원고
- 가) 원고 등의 이 사건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하는 학교폭력인 사이버 따돌림 등[2]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조치는 위법하다.
- 나) 설령 원고의 행위가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조치는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 2) 피고
- 가) 원고 등은 다수가 H에 대한 대화방을 만들어서 비방, 욕설을 하고 따돌림을 조장하고 계획하는 발언 등을 하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원고 등은 사이버 따돌림 등 온라인 이외에서도 H과 말을 섞지 않고 무시하는 등 실제 따돌림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실제 따돌림에 의한 학교 폭력 역시 이 사건 조치의 근거사유가 된다.
- 나) 이 사건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처분 중 경미한 처분인 제17조 제1항 제3호 처분에 해당하는 바, 원고가 행한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재량 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나. 판단

1) 이 사건 조치 사유에 사이버 따돌림 외에 실제 학교생활에서의 따돌림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치를 위한 자치위원회 회의과정에서 H. H의 모가 원고 등이 H을 실제 학교생활에서 따돌렸다는 진술을 하는 등, 실제 학교생활에서 따돌림이 있었는지 여부가 회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치에 관한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조치사유는 "2016. 10. 27.부터 2016. 11. 21.까지 SNS(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교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행한 사이버 폭력(비방, 욕설, 따돌림)"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조치와 관련하여 D고등학교장이 원고측에 발송한 자치위원회 참석 안내서(갑 제7호증)에도 자치위원회 안건이 'SNS상의 사이버 폭력'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안의 개요에도 '(언제) 2016. 10. 27, 2016. 11. 9. ~ 2016. 11. 21. (무엇을/어떻게) 사이버 폭력'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 ③ 2017. 7. 20.자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갑 제8호증)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조치 원인인 사이버 따돌림 등과 별개로 "원고를 비롯한 학생들이 H에게 학교 내 교실, 복도에서 사이버 언어폭력, 심리적 공격(따돌림, 째려보기, 수근대기 등), 언어폭력(험담등) 등을 하였다"는 신고에 대한 자치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였는데, 심의 결과 위와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은 없었다는 취지로 결정한 점(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H을 실제로 학교생활에서 따돌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행위만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든 사정만으로 실제 학교생활에서의 따돌림이 이 사건 조치 사유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 등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한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 즉 이 사건 조치 사유인 사이버 따돌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이유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조치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에 대하여 본다.

2) 원고 등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한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수차례에 걸쳐 H에 대한 험담 또는 비난이 포함된 발언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너희 나 왕따시키냐? 이랬다며. 그럼 셋이 이미 한뭉팅이인 건 아는 거잖아.", "여하튼 니가 그렇게 말하고 이건 진짜 이걸로 밖에 표현이 안됨. 지랄 발광을 할 거야." "어떤 년이 중심이냐고." "진심 걔랑 다니면서 느낀 건 수드라 된 기분임.", "니가 H이랑 사과하자마자 바로지 알아서 밥쳐먹고 자더라.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론 얼마나 어이없었는데.", "아니 씨발. 어떤 게잘못된 게 아니고 어떤 년을 족칠까가 되는구나", "이제 내가 G 되는 거지. 개씹창년 되는 거임", "그럼 다시 나만 병신되는군" 등과 같이 대화내용에 욕설이나 비속어를 섞어 사용하기도 한 사실, F은 "내가 학교에서 H으로부터 빼빼로를 받을 예정인데, 그걸 받으면 나는 바로 레즈비언이 된다."고 말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조한 사실, 그후 원고와 사이가 멀어지게 된 G이 H에게 위 대화내용을 전달하여 H이 그 내용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원고 등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한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이버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1)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에 따른 학교폭력의 가해자로서 각종 조치를 받을 경우 이러한 조치가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등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어떠한 행위를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것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H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을 하고, 그 과정에서 욕설을 사용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등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내에서의 이 사건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 등의 대화는 전체적으로 원고 등이 H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불만 등을 토로하는 내용에 해당하고, 이러한 대화 과정에서 욕설이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욕설 중 상당 부분은 원고 또는 F이 스스로에 대하여 자조적으로 내뱉은 것에 불과하며, H과 관련된 부분 또한 H에게 직접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기 위한 공격이 아니라, 위와 같은 비난이나 욕설이 H에게 도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H을 제외한 채팅방 구성원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화 자체를 쉽사리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사이버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다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카카오톡을 통하여 H에 대한 험담을 주고받을 당시 그 대화내용이 유

출되어 H이 이를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였고, 실제로 H은 그러한 대화내용을 인식하게 되었는바, 그러한 점에서는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는 사이버 따돌림의 요건 중 '심리적 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심리적 공격 또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사후 G을 통하여 1회적으로 [3]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의 대화내용을 알게 된 것만으로는, 원고 등이 H에 대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사이버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치는 무효이고, 피고가 그 적법성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판사 윤성식(재판장) 김윤석 최지은

## 미주

[1] 1) 피고는 학생생활기록부에 당해학년도에 기재된 것은 당해년도에 바로 반영이 되지 않고 학년말에 '마감'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되므로, 현재 학생생활기록부에 이 사건 조치에 대한 기재가 있더라도 원고의 당해년도 입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응시대학 제출용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위와 같은 기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학생생활기록부에 당해학년도에 기재된 사항은 당해년도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치 자체가 원고에 대한 중요한 신분상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치의 사유는 사이버 폭력(비방, 욕설, 따돌림)'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중 비방, 욕설은 <u>학교폭력예방법</u>상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에 의한 학교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돌림은 위 법상 사이버 따돌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하에서는 이 사건 조치의 사유를 '사이버 따돌림 등'이라고 한다.

[3] 3) 이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내에서는 원고, F 등의 대화가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된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